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의안 번호 | 관련 1060 |
|---|---|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○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 골자

○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함 (안 제4조의4)

○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(안 제4조의5)

## 3. 참고사항: 생 략

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2조제2항제8호 중 “서울특별시 및”을 “서울특별시,”로 한다

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2(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,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안 제4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|
|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 |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|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 |
|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 | ② ----------. | ② ----------.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8.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"산하기관 등"이라 한다)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| 8.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"산하기관 등"이라 한다)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|
| 〈신 설〉 | 제3조의2(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br>②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| 제3조의2(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,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|
| 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 | 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----------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---------- | 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|

| | | |
|---|---|---|
| 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서 다회용품(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용을 촉진한다. | ----------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② (개정안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|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〈신 설〉 |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 | ④ (개정안과 같음) |
|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 |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---------- 재활용 촉진, 1회용품의 사용 억제 ----------. |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(개정안과 같음) |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,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

제4조의4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4조의5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재활용촉진”을 “재활용촉진, 1회용품의 사용 억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 | 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~ 7. (생 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8.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|
| 〈신 설〉 | 제3조의2(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,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|
| 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서 다회용품(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용을 촉진한다. | 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----------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-----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|

| | |
|---|---|
| |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〈신 설〉 |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 |
|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 |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---------- 재활용촉진, 1회용품의 사용 억제----------. |